

서울고등법원

제 1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나6922 손해배상(기)
2002나693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피고, 항소인 고양시
대표자 시장 황교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12. 21. 선고 2000가합7582,
2001가합4818(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02. 10. 24.
판 결 선 고 2002. 11.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을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홍권

판사 전광식

판사 한창호